



국회의원 민병두-진선미

보도자료

정무위 / 안전행정위

2014. 2. 12. [수]

수신 : 금융위, 금감원, 안전행정부, 국회
출입기자,

담당자 : 최병천 보좌관(010-2722-1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7호 | 전화 784-6355~6 | FAX : 788-0192
홈페이지 www.badmin.net/ | 트위터 @badmin1958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admin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 ‘정보 유출’과 ‘신용 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국민통제형 주민번호’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아닌,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로
 -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만든’ 주민등록법 개정안
- 조만간에 금융지주회사법-개인정보보호법 추가 발의 예정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민병두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진보넷-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정보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법률안이다.

◆ 주민번호 유출자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4가지이다.

- ▶ 첫째,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 둘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 제5항 신설)
- ▶ 셋째,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 ▶ 넷째,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진 않는다. (부칙 제2조)

◆ 권위주의와 냉전의 산물 - ‘전 국민 통제’를 위해, ‘평생’ 따라붙는 번호를 부여하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신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라붙는>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현행 주민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즉, ‘국민 통제’를 목적으로 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 첫째,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의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되어 있다.
- ▶ 둘째, <평생 따라붙는> 방식이다.
- ▶ 셋째, 변경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가 <정보화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 ▶ 첫째, 불법 정보 유출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 ▶ 둘째, 불법으로 한번 확보하면 ‘평생’ 활용이 가능하고
- ▶ 셋째, 불법 정보의 대규모 축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 ▶ 넷째, 불법정보의 대량수집과 대량 피해를 구조화시킨다.

◆ ‘정보화 시대’ 범죄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전 세계의 공유재>가 되었다. 심지어 한국의 주민번호는 양쯔강 노인들도 한 개씩은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에는 아예 한국의 <주민번호 자동 생성기>가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하여 현행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 체계와 금융피해의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 ▶ 첫째,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을 하려는 범죄자에게 <‘더 쉬운’ 명의도용>을 허용한다.
- ▶ 둘째, 텔레마켓터 등의 비(非)대면 채널 금융상품 판매에서,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誘引)>을 제공하게 된다. ‘2차 피해’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 ▶ 셋째,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신상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점진적 이행 -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에서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서, 불법 정보 유출의 ▲활성

화 ▲대규모화 ▲축적의 용이성 ▲피해 회복 불가능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급기야 ‘신용 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는 달라져야 한다. ▲더 쉽게 변경을 허용하고 ▲‘인격과 결부된’ 고유 번호가 아닌, 임의 번호 방식으로 하고 ▲예외를 둘 경우,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

=====

※ 첨부자료 1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 대표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 02

발 의 자 :

제안이유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 등을 포함하여 1억건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로 유출된 것과 같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국가 안보상의 위협 또한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목적에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이 표시되어

나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임의의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에 엄격히 제한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주요내용

- 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를 신설하고, ‘고유한’을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 개정).
- 나. 주민등록번호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도록 한다. (안 제7조제4항 개정·제5항 신설).
- 다. 안정행정부장관이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제6항 신설).
- 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7조의2 신설).
- 마.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요구 또는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안 제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를 “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민등록번호는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되 자릿수, 숫자 배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숫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제7조5항의 신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으로 인한 경우에 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 ② (생략)</p> <p>③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④ <u>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주민등록사무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u> <u>-----.</u></p> <p>④ <u>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⑤ <u>주민등록번호는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되 자릿수, 숫자 배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⑥ <u>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목적을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p> <p>① <u>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u></p>

<신 설>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